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위원	이 만 재 위원
답변자	평창군수 (기획감사실장)	답변일자	2008. 11.
회 의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질문요지

- 지방채무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 장평 가축시장 부지 평창축협 매각금액

답변내용

[지방채무현황]

- '08. 11월 현재 지방채무액은 11,139백만원으로 원금 8,886백만원, 이자 2,253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7건에 7,218백만원(원금 5,309백만원, 이자 1,909백만원)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건에 3,921백만원(원금 3,578백만원, 이자 343백만원)입니다.

[장평 가축시장 부지 평창축협 매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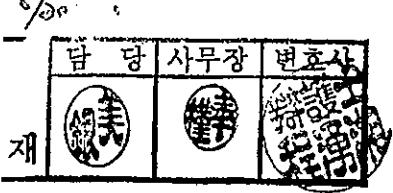
- 평창군은 장평 가축시장 부지를 평창축협에 당시 감정가격인 40,473,600원에 매각하였음.

붙 임 : 1. 지방채무 현황 1부
2. 판결서 사본 1부. 끝.

지방재무현황 (2008년 11월 현재)

[단위:천원]

사 업 명	발행 년도	발 행 조 건		발 행 액		상 환 액		체 무 잔 액		비 고
		거치/상환	방식	이율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총 계					29,769,460	20,079,000	9,690,460	18,630,261	11,192,380	7,437,881
일 반 회 계					10,751,912	8,131,000	2,620,912	3,533,888	2,822,280	711,608
'06 수해복구	2007	5년/10년	고정	4.0%	7,050,274	5,000,000	2,050,274	150,274	0	150,274
대화문화체육관건립	1998	2년/10년	고정	3.0%	349,500	300,000	49,500	318,600	270,000	48,600
진부보건지소신축	1998	2년/10년	고정	3.0%	349,500	300,000	49,500	318,600	270,000	48,600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1998	2년/10년	고정	3.0%	2,446,500	2,100,000	346,500	2,230,200	1,890,000	340,200
진부도서관건립	1998	2년/10년	고정	3.0%	349,500	300,000	49,500	318,600	270,000	48,600
평창하수도사업	1988	5년/15년	고정	3.0%	99,726	61,000	38,726	95,549	56,940	38,609
평창하수도사업	1989	5년/15년	고정	4.0%	106,912	70,000	36,912	102,065	65,340	36,725
상수도공기압특별회계					19,017,548	11,948,000	7,069,548	15,096,373	8,370,100	6,726,273
옹평상수도사업	1989	5년/15년	고정	4.0%	89,350	60,000	29,350	85,190	56,000	29,190
평창상수도시설확장	1993	5년/10년	고정	5.0%	1,553,817	1,000,000	553,817	1,528,503	975,000	553,503
개촌상수도신설공사	1994	5년/10년	고정	5.0%	153,460	100,000	53,460	140,492	87,500	52,992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1996	5년/10년	고정	6.1%	1,639,183	1,000,000	639,183	1,397,037	775,000	622,037
도암상수도시설확장공사	1997	5년/10년	변동	5.4%	9,083,597	5,000,000	4,083,597	6,709,465	2,875,000	3,834,465
도암상수도시설확장공사	1997	5년/10년	고정	2.5%	1,515,000	1,200,000	315,000	976,321	690,000	286,321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1997	2년/10년	고정	4.5%	1,419,082	1,000,000	419,082	1,314,582	900,000	414,582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1999	2년/10년	고정	4.5%	1,381,547	1,000,000	381,547	1,168,047	800,000	368,047
방림상수도시설확장공사	1999	2년/10년	고정	4.5%	1,381,547	1,000,000	381,547	1,168,047	800,000	368,047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1999	2년/10년	고정	4.5%	800,965	588,000	212,965	608,689	411,600	197,089



2007가합448

판 결 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448 손해배상(기)

원고 김종철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404-1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용균

피고 평창군

대표자 평창군수 권혁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변론종결 2008. 7. 17.

판결선고 2008. 8. 14.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898,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기부채납

원고는 피고에게, 1984. 4.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기부의 목적 : 평창군 시범경매가축시장 설치 부지용", "기부조건 : 본 토지를 기부의 목적 외에 사용할 시에는 원상복구 및 소유권을 환원조치 하실 것"으로 정하여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고 한다)하기로 상호 약정하고, 1985. 8.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조건부 증여라는 사실을 등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

피고는 1985. 6.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한우 등의 경매시장인 가축시장(이하 '이 사건 가축시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매월 5, 10, 15, 20, 25, 30일을 장 날로 정하여 경매 또는 중개 방식으로 거래를 알선하고 매매대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방법으로 가축시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

1) 그런데 축산법(1987. 12. 4. 법률 제3395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면서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가축시장을 개설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되자, 내무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는 1988. 12.경 피고에게 가축시장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일괄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1989. 1. 30. 소외 평창축산업협동조합(2003. 7. 18.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평창축협'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당시 감정가격인 40,473,600원에 매도하고 1990. 7. 3.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이전에 평창군 고시 제23호(1988. 12. 31.)로 평창축협을 가축시장 개설 허가자로 고시하여, 그 무렵부터 평창축협이 이 사건 가축시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3) 한편 피고의 축산과장은 1988. 12. 31. 피고의 재무과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평창축협으로 하여금 원고의 기부채납 조건을 승계토록 통보하였으나, 실제 피고와 평창축협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평창축협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1) 평창축협은 1988.부터 이 사건 가축시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0. 이후 구체적 및 부루셀라병의 확산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되고, 또한 문전거래 허용에 따른 가축 시장 출장 기피현상과 인근 횡성가축시장의 이용증가에 따라 출장두수가 점차 감소하여 이 사건 가축시장의 휴장과 개장을 반복하다 2004. 3. 이후 출장두수가 전혀 없게 되자 이 사건 가축시장의 운영을 중단한 채 현재까지 계류대, 경매장 등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2) 평창축협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8. 3. 6. 이 사건 가축시장을 2008. 5. 15.부터 송아지 경매시장으로 월1회 개장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2008. 4.경 이 사건 가축시장 울타리에 그려한 내용의 공고문을 붙여놓았으나, 개장예정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장을 위한 추가적인 진행상황도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6, 7호증의 각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석래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 및 평창축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대리인이 2008. 3. 13.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평창축협 조합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이 사건 가축시장의 재개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재개장 후 운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 대리인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 이석래의 증언에 의하면, 평창축협의 조합장인 이석래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축시장의 재개장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가축시장을 확정적으로 재개장할 것이라고 증언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부지라는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가축시장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에서 정한 조건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채 평창축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반환의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축시장이 일시 중단되어 있을 뿐이고 확정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부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1) 조건의 성취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기부채납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이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축시장은 2004. 3.경 그 운영이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계류대 및 경매장 건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평창축협은 2000. 이후부터 문전거래 허용에 따른 가축시장 출장 기피 현상과 인근 횡성가축시장의 이용증가에 따라 출장두수가 감소하여 이 사건 가축시장의 휴장과 개장을 반복하다 2004. 3.경 출장두수가 전혀 없어짐에 따라 가축시장의 운영이 자연적으로 종단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축산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산업 및 유통 구조적인 문제와 이 사건 가축시장 인근에 선호도가 더 높은 횡성 가축시장을 두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현상이며, 이



러한 현상은 조만간 그 개선의 가능성의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더욱이 최근 소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라 축산산업의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지게 되고, 이는 가축시장을 통한 간접거래를 기피하게 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전화를 통한 직거래를 할 수 있어 가축시장의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평창축협이 2008. 3. 6. 이 사건 가축시장을 2008. 5. 15.부터 송아지 경매시장으로 개장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가축시장 울타리에 그러한 내용의 공고문을 붙여놓았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을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급조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작성된 계획서에 따른 개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고문 부착 이외에 개장을 위한 추가적인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가축시장이 재개장되어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부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이 사건 기부채납의 조건인 '가축시장부지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가축시장이 사실상 폐장된 2004. 3. 경 기부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확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48조), 조건부 권리자는 조건성취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1990. 7. 3. 당시 피고 축산과장의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매각담당부서에서 그 조건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채 평창축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2004. 3.경 이 사건 기부채납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로서는 제3자인 평창축협에 조건성취를 내세워 대항할 수 없어 평창축협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평창축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90. 7. 3.부터 지방재정법상 5년 또는 민법상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한편 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이에는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의 성부가 미확정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로 확정될 권리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그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조건부 권리 또는 기대권이 현실적인 권리로 확정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된 때이므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으로 확정되는 때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기부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은 2004. 3.경이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4. 23.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조건성 취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피고의 앞서 본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건부 권리의 침해하는 처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된 때라고 할 것인바, 기부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3.경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윤용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4. 3. 당시의 시가는 합계 898,3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 점에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898,371,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공제 주장

피고는,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 조건 중 하나인 '가축시장 내에서의 식당운영'을 10여년간 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식당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키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의 식당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98,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8. 28.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광상현

판사 이중민 _____

판사 유효영



별지

목 록

1.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17-2 잡종지 2165m²
2.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17-3 잡종지 2506m²
3.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17-11 잡종지 1653m². 끌.



정본입니다.

2008. 8.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주사보 손 소 을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
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
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
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